

신재생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 및 REC 거래 안내



목 차

I . 전력거래

1. 전력거래 주요일정	/ 2
2. 전력거래 준비사항	/ 3
3. 계량	/ 5
4. 정산	/ 7
5. 청구 및 결제	/ 8
6. 기타	/ 10

II . REC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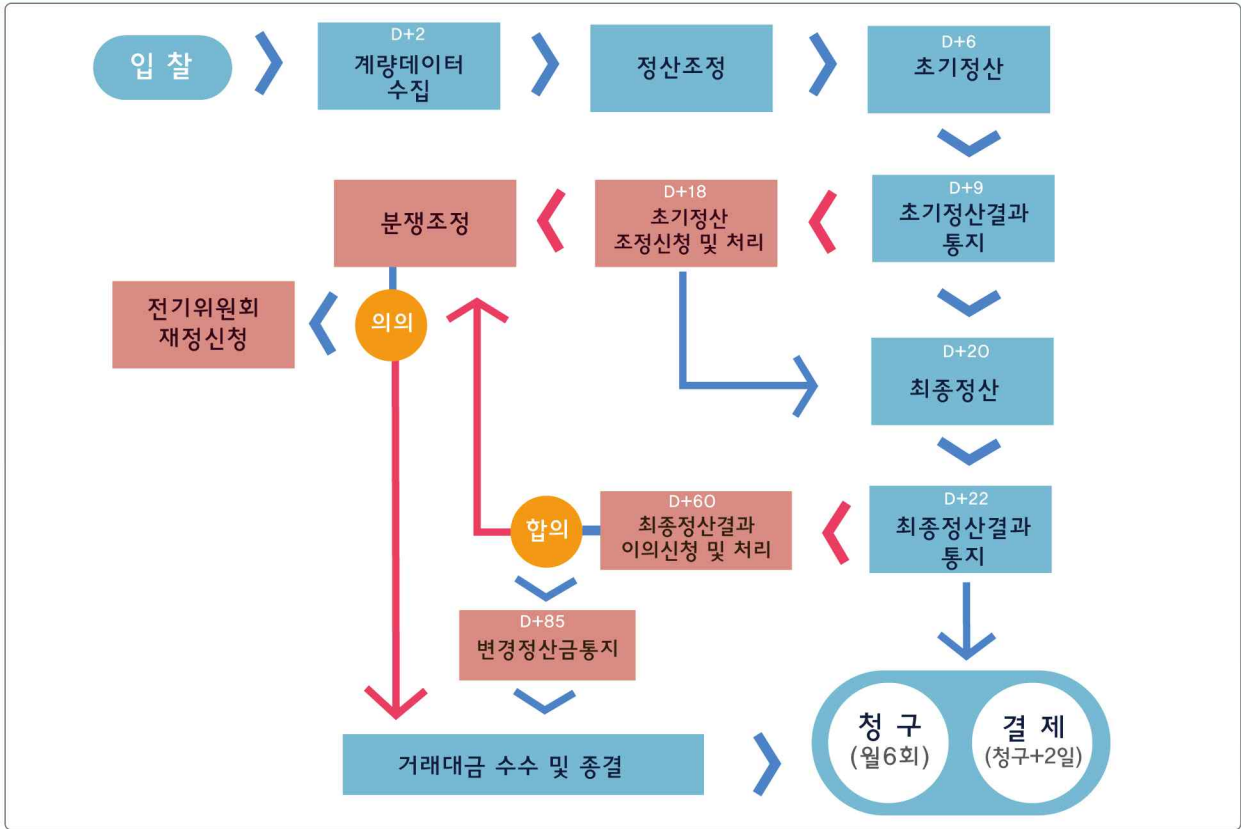
1. REC 거래시장 개요	/ 12
2. REC 거래 준비사항	/ 13
3. REC 발급	/ 13
4. REC 거래방법	/ 14
5. 계약시장 신고 및 거래절차	/ 14
6. 현물시장 거래절차	/ 16
7. 기타	/ 17

붙 임 : 담당업무별 연락처	/ 18
-----------------	------

1. 전력거래

1. 전력거래 주요일정

가. 전력거래 절차도



나. 단계별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내용	회원사 조치사항
초기정산 결과통지	1일 단위로 계량데이터를 수집하여 초기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회원사에 통지(거래일로부터 9일 이내)	계량값, 정산금액(부가가치세 별도) 확인 - 정산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조정 신청 (거래일로부터 18일 이내)
최종정산 결과통지	조정신청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회원사에 통지 (거래일로부터 22일 이내) - 초기정산에 이상이 없는 경우 초기정산과 동일	정산금액 및 조정신청 내역 반영여부 확인 - 정산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이의 신청 (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)
청구	전력거래차수별(월 6회) 전력거래대금 청구(시스템에서 청구내역 자동 생성)	청구금액 확인 후 e-Power Market에서 세금계산서 발행
결제	청구된 전력거래대금 (수수료 공제 후) 입금	전력거래대금 입금내역 확인

2 전력거래 준비사항

문의 : 1661-6590

가. 프로그램 설치

- 전력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e-Power Market 프로그램 설치 필요
 - <http://www.kmos.kr>로 접속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
SetupMOSinf.exe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 실행
- 사용자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
 - 전력거래 담당자 신규 등록 또는 변경시 신규계정 신청 필요
 - 전력거래담당자는 1개 회원사당 여러 명 등록 가능
(세무담당자는 1명만 지정 가능)
 - 'e-Power Market/고객지원/전자인증신청 안내/개인범용 인증서 발급 메뉴'에서 "계정발급 신청양식"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력IT 고객센터 센터로 신청(E-mail : kpxinfo@kpx.or.kr, Tel : 1661-6590)
 - 담당자가 변경되어 전임자의 계정을 삭제하려면 전력IT 고객센터 센터에 전화로 신청
 - 담당자 정보 변경
 - 핸드폰 번호 및 E-mail 주소 변경, 계량값 미취득시 알림 등 SMS 수신 항목 설정은 e-Power Market 첫 화면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 정보변경 메뉴에서 처리 가능
 - 세무담당자 지정 및 변경은 전력IT 고객센터센터에 전화로 신청

나. 공인인증서 등록

- e-Power Market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
 - 인증서 등록(변경) 메뉴에서 공인인증서(전용 및 범용 모두 가능) 등록
 - 개인인증서 또는 법인인증서(법인의 경우) 중 1개 선택 가능
 - ※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(범용만 사용 가능)가 필요하며 별도의 등록절차 불필요

다. 회원사 정보 변경

- 법인의 대표자, 주소 등 단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(fax :061-330-8538) 후 e-Power Market에서 신청
 - 신청 방법 : e-Power Market/회원관리/회원사정보변경에서 신청
- 단,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필요
 - ※ 양도양수 관련 신청사항은 11페이지 참조

2 전력거래 준비사항

문의 : 1661-6590

라. 발전기 추가등록

필요서류 우편제출
(제출처 : 고객지원팀)



e-PowerMarket
등록신청

- 제출 서류 : 발전기등록신청서, 발전사업 허가증, 설비변경예정서
- 신청 방법 : e-Power Market/회원관리/발전기추가에서 신청
- 신청이 완료되면 상기 메뉴에서 신청결과 조회가능

마. 정산결제 달력

□ 수령방법

- '고객지원/Help Desk/정산결제일정'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

□ 달력 보는 법

- 날짜 밑에는 그 날에 수행예정된 업무와 거래일, 거래차수가 표시되어 있음
- 오른쪽 상단에 해당 차수별 전력거래 일이 표시되어 있음

일 SUN	월 MON	화 TUE	수 WED	목 THU	금 FRI	토 SAT
12	1	2	3	4	5	6
13	14	15	16	17	18	19
20	21	22	23	24	25	26
27	28	29	30	31		

바.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 및 채권 관리

자료실 / 전력시장자료실

SMP 정산계좌변경신청서



시장정산팀

우편송부(인감증명서 원본 등 첨부)

- ※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(우편번호 58217)
- 정산계좌는 시장은행(기업은행)에 설정된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청
※ 설비용량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금융권의 은행계좌로 설정 가능(설비용량이 1MW 초과인 경우 시장은행 계좌만 가능)
- 채권양도, 질권 등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계좌변경신청서에 권리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
-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는 회원사별 1계좌만 등록 가능
※ 발전기별 정산금은 'One Stop 서비스/전력거래실적 업무지원' 또는 '시장운영 자료/기간별 시장운영자료(자료선택에서 최종정산으로 선택)'에서 조회 가능
-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내역 및 전력거래대금 채권 관련 통지내역은 e-Power Market/전력거래정산/채권채무관리에서 조회 가능

3 계 량

문의 : 061-330-8544(계량설비)/8532(계량값)

가. 계량값 조회

- '계량운영/발전기별 계량'에서 하루단위 발전기/시간대별 계량값 조회
 - * 1개월분 조회 : '시장운영자료/기간별 시장운영자료'에서 조회 가능
- 계량값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
 - 계량값 미취득 : 통신상태 점검 필요
 - * 통신망이 복구되면 전력거래소 계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량값 취득이 재개되어 e-Power Market에 실시간 계량값이 공개됨
 - 발전량이 '0'인 경우 : 통신상태에는 이상이 없으며 발전기 상태 점검 필요
 - 'e-Power Market/정보변경'에서 SMS 수신항목을 설정하면 계량값이 미취득 되거나, 태양광발전기의 발전량이 '0'인 경우 SMS 수신 가능
- 계량값이 실제 발전량과 다른 경우
 - e-Power Market에 등록된 시간대별 계량값, 계량기 현장 취득값 및 현장 모니터링 발전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에서 원인을 찾는 동시에, 거래소의 계량업무 담당자(061-330-8532)에게 연락하여 변성기 배율, 계기정수 등 확인

나. 통신망 복원 후에도 자동으로 계량값이 취득되지 않는 경우 수동취득

계량기 데이터 다운로드

계량값 산출

서식 작성

입력 요청

- 계량기에 계량데이터가 계량된 경우
 - ①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계량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음
 - ② 엑셀파일로 파일을 열어서 일자별로 시간대별 05분~00분 데이터 12개를 합산하고 CT·PT배율 및 계량기 정수를 곱하여 시간대별 계량값을 산출
 - ※ 예시 : $\sum\{100+105+110(5\text{분단위 펄스값}\dots)\} \times 8(\text{CT배율}) \times 120(\text{PT배율}) \times 0.1(\text{계량기 정수}) = 1\text{시간단위 계량값(Wh)}$
 - ③ 시간대별 계량값을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일자/시간별로 입력하여 파일이름을 붙여서 저장(서식은 e-Power Market/One stop서비스/계량업무지원/계량자료 입력신청에서 CSV파일양식 다운로드)
 - ④ e-Power Market/계량자료 입력신청에서 계량기 원본파일과 시간대별 계량파일을 첨부하여 입력요청
- 계량기 내부의 데이터가 망실 되었을 경우

검증자료 확보

계량값 산출

서식 작성

입력 요청

- ① 회원사에서 발전단 실적을 작성하며 검증자료 확보
- ② 발전단 전력량을 송전단 전력량으로 환산하여 시간대별 계량값 산출

3 계 량

문의 : 061-330-8544(계량설비)/8532(계량값)

구 분	산 식
송전단 전력량 (kWh)	발전단 전력량 - (소내 소비량 + 변압기 손실량 + 선로 손실량) ※ 소내 소비량, 선로 손실량이 없을 수 있음
변압기 전력량 (kWh)	무부하 손실량 + [변압기 부하량÷(변압기 정격용량×부하역율×1h)] ² ×정격부하 손실량
선로 전력량 (kWh)	선로 전력량÷(선로정격용량×부하역율×1h)] ² ×정격선로 손실량 ※ 3상인 경우 = 3×1상 선로의 저항(Ω)×1상 선로의 정격전류 (kA) ² ×1h

- ③ ②에서 계산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Wh로 변환 후 일자별로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계량서식에 시간별로 입력하여 파일이름을 붙여서 저장
- ④ e-Power Market/계량자료 입력신청에서 발전단 전력량, 소내소비량, 변압기 손실량 등 검증을 위한 자료와 시간대별 송전단 전력량 작성파일을 첨부하여 입력 신청

다.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정

- 계량설비 오차시험
 - 전력량계 시험주기

설비용량	1MW 초과	1MW 이하
시험주기	3년6월 ± 6월	면 제

※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는 해당 연도의 오차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

- 변성기 및 기타 설비의 시험은 고장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행
- 발전사업자는 향후 2년간의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e-Power Market/One stop서비스/계량업무지원/계량설비시험 및 검정관리에서 등록해야 함
- 계량설비 시험을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(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)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시행일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로 통보하고(회원사가 직접 시험 시행시 입회요청), 그 시험결과를 시험시행 후 14일까지 전력거래소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 - * 회원사가 직접 계량설비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, 전력거래소는 시험시 입회하여 시험내용을 확인해야 함

□ 계량설비 검정

-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유효기간(7년)이 만료되는 전력량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정을 받아야 함

3 계 량

문의 : 061-330-8534(계량설비)/8532(계량값)

-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
 - 봉인 또는 봉인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'e-Power Market/계량업무지원/봉인 직접시험신청'에서 요청하여야 함

신규 발전소	봉인 시행 30일전까지
기존 발전소	봉인 또는 봉인해제 시행 10일전까지

※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해 긴급한 신청 필요시 즉시 신청도 가능

4 정 산

문의 : 061-330-8533

가. 전력거래대금 산정기준

- 정산금 = \sum [시간별대별 SMP(계통한계가격) × 시간대별 발전량]
 - '계통한계가격'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 (원/kWh)을 의미하며 육지와 제주지역으로 구분됨
 - 계통한계가격 조회방법
 - '시장가격/계통한계가격'에서 시간대별 시장가격을 조회

나. 초기정산내역 통지

- 거래일(1일 단위)에 대한 초기정산명세서(상세내역)가 공표됨
 - '전력거래정산/정산명세서'에서 '내용'을 초기 선택, '거래일'을 조정하여 자세한 초기정산 세부내역 조회(시간대별 계량값과 정산금액)
 - 발전기별 시간대별 계량값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계량담당자에게 정정 요청 (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조치사항 불필요)

다. 최종정산내역 통지

- 거래일(1일 단위)에 대한 최종정산명세서(상세내역)가 공표됨
 - 전력거래정산/정산명세서에서 '내용'을 최종 선택, '거래일'을 조정하여 자세한 최종정산 세부내역 조회(시간대별 계량값과 정산금액)
 - 초기통지시 이상이 있어 정정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여부 확인
 - 발전기별 시간대별 계량값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계량담당자에게 정정 요청 (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조치불필요)

4 정산

문의 : 061-330-8533

라. 전력거래대금 청구 이후 정산금액 변경시

- 수정 후 정산내역 조회
 - '전력거래정산/정산명세서'에서 수정정산이 반영된 세부내역 조회(시간대별 계량값과 정산금액)
 - 'One Stop 서비스/정산업무지원/정산정정결과통지'에서 수정정산으로 인한 사유와 변동내역 조회 가능

5 청구 및 결제

문의 : 061-330-8534

가. 청구

청구서 조회

세금계산서 발행

거래대금 입금

- 월 6회 청구 및 결제가 이루어지며, 해당 결제차수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
 - 청구가 완료된 기간에 대한 수정정산 발생시 수정정산내역에 대한 청구 및 결제는 수정정산이 처리된 해당월의 6차에 반영됨
 - 통합결제 청구 신청
 - 신재생발전기만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, 6차에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음
 - 이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회원사명 및 통합청구 개시시기를 포함하여 공문 작성, 인감 날인 후 발송(Fax : 061-330-8598 또는 우편 :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)
- 청구서 조회
 - 전력거래정산/청구서에서 전력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조회
 - 최종 통지 후 수정정산에 대한 청구내역은 전력거래정산/수정청구서에서 조회
 - 청구서는 전력거래소에서 작성하므로 회원사는 별도작성 불필요
- 세금계산서 발행
 - 청구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/매출보관함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전송(전송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필요)
 - 지정된 세무담당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접속 가능
 - 청구일 10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 - 중복발행, 발행누락 또는 발행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회원사 부담
 - 전자세금계산서/매입보관함에서 전력거래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조회

5 청구 및 결제

문의 : 061-330-8534

□ 청구·결제 차수별 전력거래 기간

구 분	전력거래일	대금 결제일
1차	1일~3일	당월 28일
2차	4일~8일	익월 5일
3차	9일~13일	익월 10일
4차	14일~16일	익월 15일
5차	17일~27일	익월 23일
6차	28일~말일	익월 26일

※ 대금 결제일은 휴일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일정은 정산결제달력 참조

나. 결제

- 결제일에 해당 결제차수의 거래대금이 15시까지 정산계좌로 입금됨
 - 결제금액 = 전력거래대금 + 부가가치세 - 전력거래수수료
 - * 전력거래수수료 차감 : $0.086\text{원/kWh} \times \text{전력거래량} + \text{부가가치세}$
 - * 2017.01.01 이후 거래분부터 0.098원/kWh 적용됨
- 결제대금 조회
 - 전력거래정산/결제금액에서 '결제일자' 또는 '차수'를 조정한 후 조회

6기 타

가. 기간별 전력거래내역 조회

- '시장운영자료/기간별 시장운영자료'에서 최대 90일까지 시간별로 계량값, 정산금액 확인 가능

나. 전력거래실적 발행신청 및 조회

- 'One Stop 서비스/전력거래실적 업무지원/전력거래실적 발행신청'에서 기간/발전기별 전력거래실적 확인서를 직접 발급 가능

6 기타

다. 전력거래대금 채권관리

- 채권양도 등 통지시 아래의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시장정산팀에 제출
- *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시 SMP 정산계좌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

회원사가 통지시	양수인(또는 질권자)이 통지시
확정일자 받은 통지서 원본 계약서 사본 회원사 인감증명서 원본 회원사 사업자등록증 사본	좌동 " " " " " " 양수인(또는 질권자) 인감증명서 원본 양수인(또는 질권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

라. 신재생 사업자의 거래기관별 차이

구분		전력거래소	한 전	비고
설비용량		1,000kW 초과 (의무) 1,000kW 이하 (선택)	1,000kW 이하	
판매가격		시간대별 시장가격 (SMP)	월별 가중평균 시장가격 (SMP)	
등록비		20,000kW 이하 : 없음 20,000kW 초과 : 10만원	해당없음	회원 가입시
연회비		20,000kW이하 : 없음 20,000kW 초과 500,000kW 까지 : 120만원	해당없음	
계량기	등급	0.5급	0.5급, 1.0급	0.5급 기준
	가격	450만원 내외	250만원 내외	
검침		시간대별 자동 검침	월별 수동 검침	
통신		통신비 부담	해당없음	
거래수수료		0.086원/kWh	-	

마. 발전기 양도·양수 등

- 관련서류를 전력거래소 고객지원팀으로 제출 후 e-Power Market/회원관리에서 변경 신청

6 기 타

바. 회원관리 관련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승계	양수도		탈퇴· 변경	발전기 추가등록	계량 봉인
	합병/분할	사업양수	발전기양수			
1. 회원가입 신청서		○				
2. 사업자등록증	○	○		○		
3. 발전사업허가증	○	○	○		○	
4. 서약서	○	○				
5. 거래자등록 신청서		○				
6. 발전기등록 신청서					○	
7. 계좌사본	○	○				
8. 인감증명서	○	○				
9. 계정신청서	○	○				
10. 공문	○	○	○	○		○
11. 양수도계약서		○	○			
12. 총회결의서	○					
13. 법인등기부	○					
14. 부동산등기부		○	○			
15. 설비변경예정서					○	
16. 계량등록부						○
17. 안전검토서						○
18. 설비단선도 및 계량3상 결선도						○
19. 시험성적 (주MTR,CT/PT,전력량계)						○

사. 전력거래 관련 통계정보 조회

- 전력통계정보시스템(<https://epsis.kpx.or.kr>)에 접속
 - 계통한계가격(월별, 연도별), 지역별(17개), 전원별(태양광 등) 설비 이용률 등 전력거래 관련 다양한 정보 조회 가능

II.

REC 거래

1. REC 거래시장 개요

가. 기본개념

- 정의 :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- 발급량 : 설비별 전력공급량(MWh) × 설비별 가중치
 - 설비별 가중치는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 별표 3」 참조
-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년

나. REC 거래시장 구분



- ※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: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 계약(12년 이상)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
- ※ 향후 태양광 / 비태양광 REC 거래 시장 통합 운영 예정('16.3월)

다. 기관별 주요역무

전력거래소	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	공급인증서 발급, 등록, 관리 및 폐기,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운영
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, 정산, 결제	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
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	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
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	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

2 REC 거래 준비사항

문의 : 061-330-8447-8

회원가입 절차



가. 사용자 등록

- REC 거래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rec.kpx.info>)에 접속하여 사업자 및 사용자 정보 등록(→ 아이디와 패스워드 생성)
 - 사업자(대표자)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: 사용자 자동 승인
 - 사업자(대표자)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: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 필요
 - 제출서류 : 사업자 등록증, 위임장(REC 거래시스템/자료실의 소정양식)
 - 제출방법 : (팩스) 061-330-8597, (E-mail) rec@kpx.or.kr

나. 공인인증서 등록

- REC 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
 - 공인인증서는 범용(개인) 또는 범용(법인)만 가능
 - ※ 개인전용 공인인증서와 e-세로 공인인증서는 로그인 인증서로 사용 불가

3 REC 발급

문의 : 031-260-4865

가.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발급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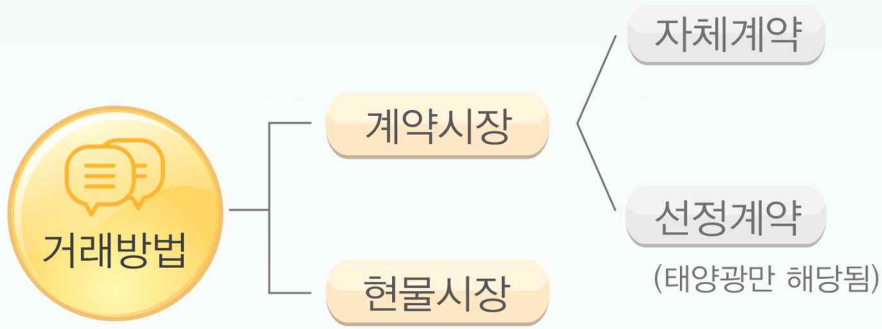
- ▶ 설비확인 신청은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(초과시 발전량 소급 적용 불가)
- ▶ 접수 후 1개월 소요

- ▶ KEA 발전량 취득 (매달 23일 이후)
- ▶ 발전량 업로드 (매달 26일 이후)
- ▶ REC발급신청 (발급신청 기한일 엄수)

- ▶ 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소는 3일 이내 발급가능 (수수료면제발전소)
- ▶ 설비용량 100kW이상 발전소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발급가능 (수수료 : 1REC당 55원, 부가세 포함)

※ KEA : 한국에너지공단

4 REC 거래방법



가. 계약시장

- 정의 :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
- 자체계약 : 연중 시행 (태양광, 비태양광)
 - 공급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며, 신재생사업자는 이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함
 - ※ 자세한 사항은 REC거래시스템(rec.kpx.info) 내 [공지사항]에서 '공급의무자 담당자 연락처' 참조 문의
- 선정계약 : 상반기, 하반기 시행 (☎ 문의 : 031-260-4854~8, 4852)
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
 -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 장기매매계약 체결
 - ※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www.knrec.or.kr) 내 「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」 참조 문의

나. 현물시장 : 전력거래소 운영(☎ 문의 : 061-330-8447, 8448)

- 정의 :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
- 개설주기 : 비태양광 (매월 첫째주, 셋째주), 태양광 (매월 둘째주, 넷째주)
 - ※ 향후 태양광 / 비태양광 REC 거래 시장 통합 운영 예정('16.3월)
- 참여방법 : 전력거래소 REC 거래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
 - ※ 자세한 사항은 REC거래시스템(rec.kpx.info) 내 [현물시장 주요기능]의 '매뉴얼' 과 아래내용 참조

5 계약시장 신고 및 거래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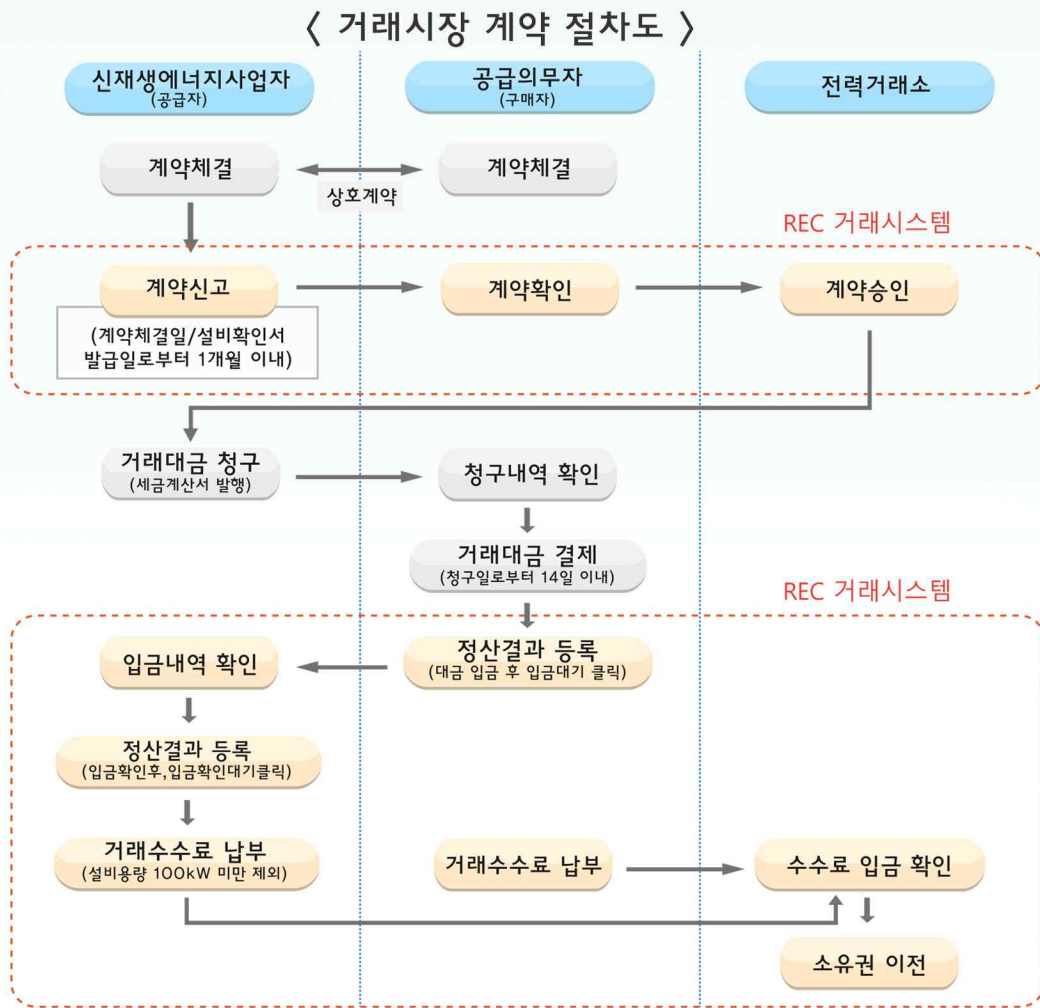
문의 : 061)330-8447-8

가. 거래절차

- 계약 내용에 따른 거래대금 정산·결제 후 전력거래소의 확인절차를 거쳐 REC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거래가 완료

5 계약시장 신고 및 거래절차

문의 : 061-330-8447-8



□ 계약시장 등록

- ‘REC 거래시스템/거래시장/계약시장/계약시장등록/계약등록’에 입력
 - 자세한 사항은 ‘REC거래시스템/사용자지원/자료실’에서 계약시장 계약등록 매뉴얼 참조

○ 계약신고기한 준수

-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REC 거래시스템에 계약등록(신고)해야 함. 단, 계약신고 기한 내 설비확인서가 발급이 안 될 경우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등록(신고) 해야함

□ 계약등록 여부 및 상태 확인

- ‘거래시장/계약시장/계약시장등록’에서 등록기간을 수정하여 조회

□ 거래대금 결제
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가 발급되면 발전사업자(매도자)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정산요청확인서를 공급의무자(매수자)에게 발송(우편 또는 E-mail)하고, 공급의무자가 관련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
 - 세금계산서는 발전사업자가 자체발행하고, 거래대금정산요청확인서는 REC가 발급되면 ‘REC거래시스템/정산관리/매도거래관리’에서 출력 가능
 - REC 거래대금 결제계좌는 공급의무자에게 등록 요청

6 현물시장 거래절차

문의 : 061)330-8447-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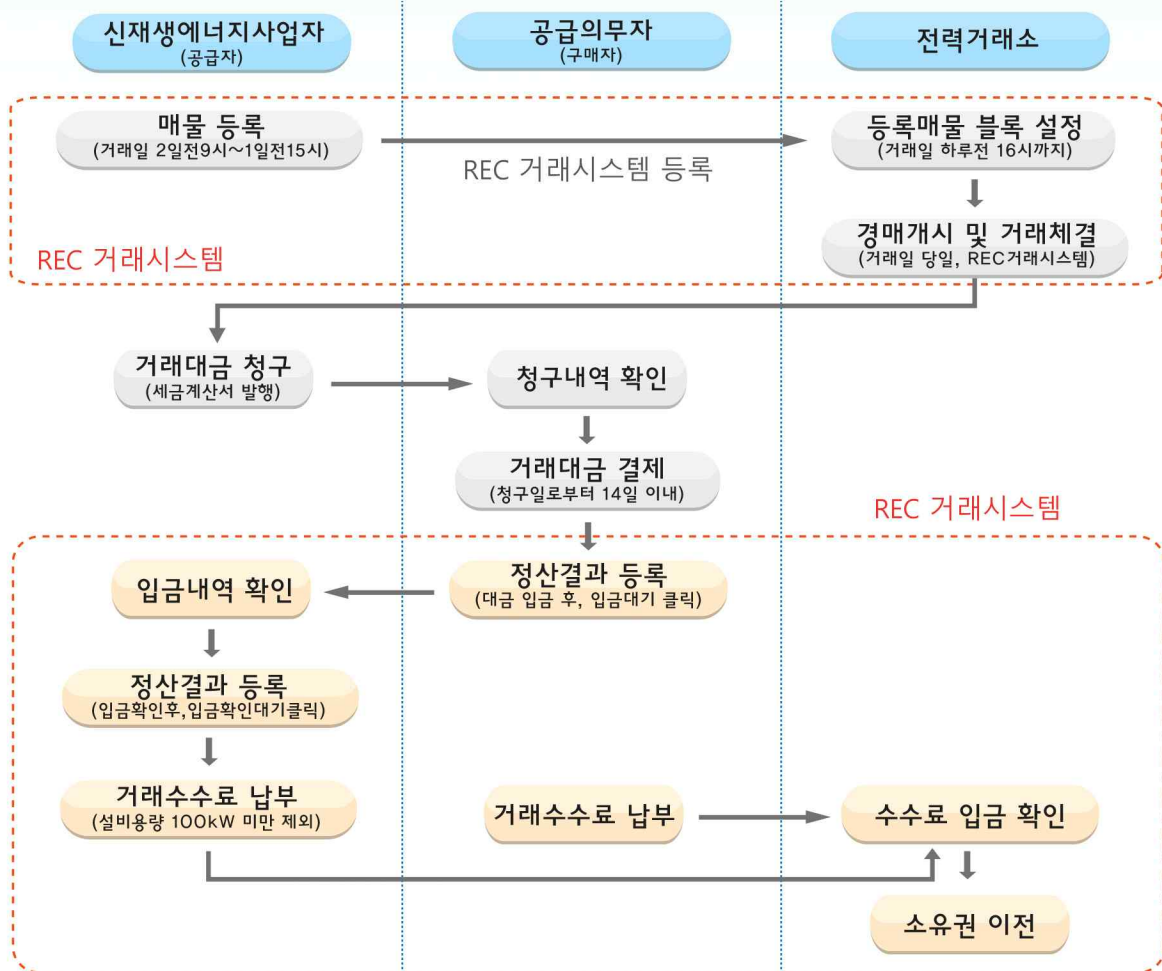
가. 거래방식

- 매매체결 방식 : 경매방식
- 낙찰순위 : 최고 매수가격을 제시한 자,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

나. 거래절차

- 매도자의 매물등록 후 거래일에 경매방식으로 낙찰된 거래의 거래대금 정산 및 결제와 전력거래소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이 됨으로써 거래가 완료

〈 현물시장 계약 절차도 〉



다. 매물등록

- 매물등록/REC 매물등록에서 등록
 - ‘매물등록 수량’ 및 ‘개당 REC 가격’ 단가를 입력
 - ‘매물등록’한 내역은 거래일 전일 오후 2시 50분까지 수정 또는 삭제 가능

라. 거래대금 결제

- 공급의무자가 발전사업자의 e-mail로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 관련 서류를 공급의무자에게 제출

6 현물시장 거래절차

문의 : 061)330-8447-8

- 공급의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거래대금 직접 지급
- REC거래대금 결제계좌는 공급의무자에게 등록 요청
- 'REC거래시스템/정산관리/매도거래관리'에서 매매체결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

7 기타

문의 : 061)330-8447-8

가. 매도거래 관리

- '거래시장/정산관리/매도거래관리'에서 REC 시장에 매물을 등록, 매도 및 매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
-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거래내역에 대한 REC 판매대금 및 수수료 입금 확인 처리

나. 자료실, 공지사항

- 거래시장(현물, 계약)의 거래결과 및 정보 제공(REC 거래시스템)
- REC 현물시장 거래정보, REC 거래동향리포트, 제주지역 참조가격 등 정보제공

다. 수익성 자가진단서비스

- REC거래시스템/창업 디딤돌종합서비스에서 제공
- 전력시장가격 및 REC가격 전망치를 반영, 향후 20년간의 투자비 대비 수익성 자가진단 가능

담당업무별 연락처

구분		담당부서	전화번호
전력거래	e-Power Market 설치 ----- 공인인증서 및 담당자 계정 등록	전력 IT 고객 서비스센터	1661-6590
	회원사 정보변경 ----- 발전소 양도·양수	고객지원팀	061-330-8545
	계량기 봉인, 해제		061-330-8545
	계량값 취득		061-330-8544
	정산업무 ----- 청구, 거래대금 결제, 세무	시장정산팀	061-330-8532
	전력거래대금 채권관리 (채권양도, 질권 설정 등)		061-330-8533
			061-330-8534
	REC 거래	설비 확인 ----- REC 발급	한국 에너지공단
REC 거래시스템 등록 ----- REC 거래		시장운영팀	031-260-4865
			061-330-8447~8

e-Power Market 메뉴 구성

이전회원님 안녕하세요. 로그인 | 정보변경 | 메시지 | ? 도움말

마이 메뉴 | 최근 메뉴

정산명세서 | 정산금

공지사항

전차세금계산서

전력수요

기상정보

시장가격

계량운영

입찰

계량운영

전력거래장안

기반요금

시장운영자료

뉴스/속보

가격기준

위원회현황

고객지원

One Stop 서비스

관련자

- 메뉴검색
- 매출세금계산서 발급
- 매입세금계산서 발급
- SMP(계통한계가격)조회
- 계량운영 : 발전기별 계량값 조회
- 초기·최종정산명세서 조회
- 청구서·수정청구서 조회
- 결제금액 조회
- 기간별 전력거래자료(계량값, 정산금)조회
- 정산결제달력
- 계량자료 입력신청
- 계량설비 시험계획 제출
- 봉인/직접시험신청
- 자료실
- 전력거래실적증명서 발급

- 담당자 정보 변경
- SMS수신항목 설정

REC 거래시스템 메뉴 구성

smart KPX 전력거래소

HOME | 회원가입 | 공인인증서등록 [회원가입, 공인인증서등록 메뉴열]

ID: PW: 로그인

메뉴전체보기
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
REC Trading System

매매체결 확인서 발급
판매대금 및 수수료 입금
확인처리

계약내역 조회

현물시장 주요기능
계약시장 주요기능
기타 부가 기능

매뉴얼 매물등록 REC입찰 정산관리
매뉴얼 계약등록 계약확인 정산관리

자료실 Q & A 원격지원
창업 디딤돌 종합 서비스
REC발급 시스템
RPS-RPA 통합관리시스템

알림
공지사항
현물시장 매물등록
더보기 >

현물시장거래현황

계약시장 등록

거래대금 요청 확인서 발급
판매대금 및 수수료 입금 확인 처리

태양광	일반 (비태양광)
2015년도 ▶	2015년도 ▶
2014년도 ▶	2014년도 ▶
2013년도 ▶	2013년도 ▶
2012년도 ▶	2012년도 ▶

REC Market Calendar

태양광시장 일반시장
수 목 금 토

SMP
계통한계가격

smart KPX 전력거래소

개인정보취급방침

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 (우 520-350)
TEL : 061-330-8447~8448 | FAX : 061-330-8597 | E-mail : rec@kpx.or.kr | 사업자번호 : 120-82-05834
본 사이트는 IE8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IE6버전은 일부 페이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

Norton SECURED
SSL 인증서 발급